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58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강설시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제설·제빙 책임순위(안 제3조)
- 다.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라.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안 제5조~6조)
- 마. 안전 유의 및 중지(안 제7조~8조)
- 바. 제설·제빙도구 비치(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24. ~ 9.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

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 (KBC 2015, 국토교통부)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적설량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비 고
0.5이하 지역 (성동구 전역)	50.0	25.0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 <sup>2</sup> 이상으로 한다.(KBC 20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와 관련없음

## 4. 작성자

- 토목과 최우람(2286-5775)

## <관 련 법 령>

### □ 자연대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0. 19. /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7. 10. 20.
- 다. 상정일자: 2017. 10. 31.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 2. 제안개요

- 가. 제안설명: 안전건설교통국장
- 나. 제안이유  
강설시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  
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  
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제설·제빙 책임순위(안 제3조)
- 다.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라.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안 제5조~6조)
- 마. 안전 유의 및 중지(안 제7조~8조)
- 바. 제설·제빙도구 비치(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24. ~ 9.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 제설·제빙의 책임순위와 제설·제빙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5조 ~ 제6조에서는

- 제설·제빙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 8조에서는

- 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공동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서 요청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조례안 제9조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주민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작업도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보관할 공공작업 도구함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